

국내 ○○기관 실험동물 사체 무단폐기

2013년 5월,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경남 도내에 위치한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실험동물의 사체, 혈액 등과 같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*의료폐기물을 일부 대학에서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음을 확인



1. 사고 개요

- 가. 일 시 : 2013년 5월 30일(목)
- 나. 장 소 : 국내 ○○기관 실험실
- 다. 사고 유형 : 기타사고(의료폐기물 무단폐기)
- 라. 피해 현황 : 보고된 피해사항 없음

2. 사건 경위

- 가.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와 혈액, 주사바늘 등과 같은 의료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을 확인
- 나.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위해를 줄 수 있어 무단 폐기로 인한 2차 감염이나 오염이 우려됨

3.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

- 가. 대학내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**기관 IACUC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, 안전성, 신뢰성을 사전에 심의 받을 것**
- 나.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**의료폐기물은 발생 단계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**

- ▷ 조직물류[합성수지류] :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장기·기관·신체의 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
- ▷ 병리계[합성수지/골판지류] :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폐배지, 폐장갑 등
- ▷ 손상성[합성수지류] : 조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등



<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>

- 다. 전용용기는 **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**하고, 사용 완료 후에는 **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**하여 **대학/기관에서 지정하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**할 것

* 의료폐기물 : 보건·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,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·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